

# 은어송 하늘채 리버뷰(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시블럭 1롯데) 입주자 모집공고문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어송 하늘채 리버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방문을 각 일정별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방문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분양일정, 청약안내 및 상품관련 등의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http://hanulche-riverview.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10입니다.(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동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동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신청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대상	필요(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해당지역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그외)	09월 23일(목)	09월 24일(금)			
일정	09월 23일(목)	09월 24일(금)	09월 28일(화)	10월 05일(화)	10월 25일(월) ~ 10월 29일(금)	-	-
방법	인터넷 청약(08:00 ~ 17:30)	인터넷 청약(08:00 ~ 17:30)	인터넷 청약(08:00 ~ 17:30)	인터넷 청약(08:00 ~ 17:30)	개별조회(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I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과 - 6804호(2021. 9. 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대전광역시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지구) A1블럭 1롯데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3층 8개동 총 934세대

[특별공급 458세대(일반기관추천) 92세대, 다자녀가구 92세대, 신혼부부 185세대, 노부모부양 25세대, 생애최초 6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2024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680	01	059.9307A	59A	59.9307	18.4086	40.7575	119.0969	37.2761	122	12	12	24	3	8	59	63	5	
		02	076.6182A	76A	76.6182	22.6315	99.2497	51.6365	150.8863	47.6555	30	3	3	6	2	14	16	1	
		03	084.9598A	84A	84.9598	24.7566	109.7164	57.0820	166.7984	52.8439	351	35	35	70	10	24	174	14	
		04	084.9598B	84B	84.9598	25.7583	110.7181	57.6032	168.3212	52.8439	202	20	20	40	6	14	100	102	8
		05	084.9260C	84C	84.9260	26.1994	111.1254	57.8151	168.9405	52.8229	216	21	21	43	6	15	106	110	8
		06	084.9598D	84AT	84.9598	24.7566	109.7164	57.0820	166.7984	52.8439	11	1	1	2	-	1	5	6	-
		07	084.9598E	84BT	84.9598	25.7583	110.7181	57.6032	168.3212	52.8439	2	-	-	-	-	-	2	-	-
		합계									934	92	92	185	25	64	458	476	36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약식 표기 (타입)	세대수	동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1.12.27)	2차 (22.06.27)	3차 (22.12.26)	4차 (23.06.26)	5차 (23.11.27)	6차 (24.04.25)		
59A	122	101동 1호, 102동 5호, 103동 5호, 107동 5호, 108동 5호	1층	5	50,322,000	222,678,000	273,000,000	27,300,000	(21.12.27)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81,900,000
			2층	5	50,322,000	224,678,000	275,0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82,500,000	
			3층	5	50,322,000	228,678,000	279,0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83,700,000		
			4층	5	50,322,000	233,678,000	284,0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85,200,000		
			5~최상층	102	50,322,000	237,678,000	288,0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86,400,000		
76A	30	104동 5호	1층	1	64,334,000	281,666,000	346,0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103,800,000		
			2층	1	64,334,000	283,666,000	348,0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104,400,000			
			3층	1	64,334,000	289,666,000	354,0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106,200,000			
			4층	1	64,334,000	294,666,000	359,0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107,700,000			
			5~최상층	26	64,334,000	300,666,000	365,0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109,500,000			
84A	351	101동 2호, 101동 3호, 102동 3호, 102동 4호, 103동 3호, 103동 4호, 104동 3호, 104동 4호, 105동 3호, 106동 1호, 107동 3호, 107동 4호, 108동 3호, 108동 4호	1층	11	71,339,000	316,661,000	388,0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16,400,000		
			2층	11	71,339,000	318,661,000	390,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117,000,000			
			3층	14	71,339,000	325,661,000	397,0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19,100,000			
			4층	14	71,339,000	331,661,000	403,0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20,900,000			
			5~최상층	301	71,339,000	337,661,000	409,0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84B	202	101동 5호,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1호, 105동 1호, 106동 3호, 107동 1호, 108동 1호	1층	2	71,339,000	316,661,000	388,0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16,400,000			
			2층	2	71,339,000	318,661,000	390,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117,000,000				
			3층	8	71,339,000	325,661,000	397,0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19,100,000				
			4층	8	71,339,000	331,661,000	403,0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20,900,000				
			5~최상층	182	71,339,000	337,661,000	409,0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84C	216	101동 4호,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 105동 2호, 106동 2호, 107동 2호, 108동 2호	1층	8	71,310,000	316,690,000	388,0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16,400,000			
			2층	8	71,310,000	318,690,000	390,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117,000,000				
			3층	8	71,310,000	324,690,000	396,0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118,800,000				
			4층	8	71,310,000	330,690,000	402,0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5~최상층	184	71,310,000	336,690,000	408,0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22,400,000				
84AT	11	101동 2호, 102동 3호, 102동 4호, 103동 3호, 103동 4호, 104동 3호, 104동 4호, 107동 3호, 107동 4호, 108동 3호, 108동 4호	5~최상층	11	71,339,000	413,661,000	485,0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45,500,000			
84BT	2	101동 5호, 106동 3호	5~최상층	2	71,339,000	413,661,000	485,0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45,500,000			

## III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호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제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도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대전광역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 III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계약

구분	59A	76A	84A	84B	84C	84AT	84BT
발코니 확장비	18,000,000	22,000,000	25,000,000	25,000,000	23,000,000	25,000,000	25,000,000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마감재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 IV 기타